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창 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연료 혁신이

일어나는 등 자동차 연료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각화 된 자동차 연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와 수소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2016. 12. 2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차 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